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1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중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“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”의 요건을 삭제함(안제5조)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과 소		사회복지과 (940-4392)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사회담당	조 규 봉
	담 당 자	이 종 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문
제5조(지급정지)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~3. (생략) 4.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 을 때	제5조(지급정지)①----- ----- ----- ----- 1~3. (현행과 같음) 4. (삭제)